

	<h2 style="margin: 0;">집중수업 운영규칙</h2>		규정번호	3-3-31	
			제정일자	2020.03.01.	
	개정일자	-			
	개정번호	ver .0	총페이지	1	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학칙 시행세칙」 제29조의 집중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 정의)** “집중수업”이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별 교과목별로 학점당 이수시간(학점당 15시간 이상)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교과목 운영 승인)** ① 집중수업은 전문학사 교육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, 산업체위탁과정은 제외한다.

② 집중수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는 학과 ‘교육과정개발및편성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쳐 ‘집중수업 운영신청서’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.

③ 집중수업 교과목은 대학 「교육과정심의위원회」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.

④ 집중수업 교과목은 하계 및 동계 계절학기에 개설할 수 없다. 단, 신입생의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수업은 입학 전에 시행할 수 있다.

⑤ 주당 수업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집중수업으로 운영할 수 없다.

**제4조(운영 방법 등)** ① 집중수업은 수업일수를 제외하고는 일반 교과목과 동일하게 운영한다.

② 집중수업 교과목을 포함한 모든 교과목은 학기 시작 후 수업일수 4분의 3 이내에 총 이수시간 4분의 3 이상의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.

③ 집중수업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는 15주 운영을 기준으로 작성한다.

④ 집중수업 교과목의 성적 입력과 강의평가는 일반 교과목과 동일한 시기에 진행한다.

⑤ 집중수업 교과목 수업의 공적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은 총 이수시간의 4분의 1까지만 허용한다.

**제5조(강의시수 인정 및 강사료 지급)** ① 집중수업 교과목의 담당 교원 주당 강의시수는 15주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.

② 집중수업 교과목의 강사료는 수업 기간과 관계없이 15주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.

**제6조(학적변동에 따른 성적처리 등)** 집중수업 교과목의 수업이 종료되어도 학기 시작 후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이전에 휴학 및 자퇴한 학생에게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.

**제7조(보칙)**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본문 제3조4항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